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21정입 또는 28정입 1사이클)의 수수료는 230원, 콘돔 1감(6개입)은 200원, 자궁내장치 1전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보급금액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징수처리비의 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 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에 징수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전당 1,000원은 전액 피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 콘돔 6개입 1갑)의 수수료는 200원으로 한다.</p> <p>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300원으로 한다.</p> <p>이 경우 300원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의 수수료는 230원, 콘돔 1갑(6개입)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p> <p>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p> <p>이 경우 보급금액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5조 (징수처리비의 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증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매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 (징수처리비의 교부) 매분기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 자궁내장치 수수료증 건당 1,000원은 전액 피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사용한다.</p>